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재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2. 3.

발 의 자 : 김재상, 김성현, 김정곤,
김정미, 김태근, 박교상,
박주연, 윤종호, 이수태,
임춘구

1. 개정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일부개정 법률이 2012. 1.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

가.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,

나.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, 두 번째·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함.

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시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미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,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.
2.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, 두 번째·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.

조례 제856호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“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”를 “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 제14조2에 따른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시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미시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 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, 의 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 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</u> <u>1.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.</u> <u>2.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, 두 번째·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.</u>
부칙(조례 제856호 2011.1.5) 제2조(유효기간) 제9 조제7 호·제8 호, 제11조부터 제 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부칙(조례 제856호 2011.1.5) 제2조(유효기간) 제9 조제7 호·제8 호, 제11조부터 제 14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은 2015년 11월 2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관 련 법 령

○유통산업발전법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영업시간 제한

2. 의무휴업일 지정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1.17]